

## 협의취득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서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
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동 토지의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.<BR>(대법원 1981.05.26. 선고 80다2109 판결)<BR>